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복수의 소방용품 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채현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667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의 취지	6
2. 복수의 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1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채현일의원 등 14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29.
3. 회부연월일 : 2025.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소방용품 기술발전 및 다양화로 인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제품검사에 대해서만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에도 도모하고자 함(안 제46조).

또한, 현행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의 인증업무를 소방청

장이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증 업무의 단독 운영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증수요에 대한 지연 처리, 품질검증의 객관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형식승인·성능인증 업무 등을 복수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0조 등).

현행	개정안
제46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u><신설></u>	제46조(형식승인·성능인증 또는 제품 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청 장은 형식승인·성능인증 또는 제품 검사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제1항·제2항,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38조에 따른 형식 승인 및 변경승인 2.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 른 제품검사업무 3. 제40조제1항·제6항, 제41조제1항 에 따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①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제 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	② 소방청장이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에 대 하여 지정하여야 하고,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

현행	개정안
<u>라 한다</u>)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u>전문기관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u> ③ (생략) 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u>따라</u>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u>제품검사</u>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u>있으며</u>,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⑥·⑦ (생략)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u>제품검사 또는 실무교육 등</u> 지정받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u>부령으로 정한다.</u>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③ (현행과 같음) ④ ----- ----- <u>따라</u> <u>형식승인·성능인증 또는</u> -----. ⑤ ----- ----- ----- <u>형식승인·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 업무</u> ----- ----- <u>있으며, 형식승인·성능인증 또는</u> -----. ⑥·⑦ (현행과 같음) 제47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 ----- ----- ----- -----. 1. (현행과 같음) 2. ----- -- <u>제46조제1항 각 호의</u> ----- -----

현행	개정안
3.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생략)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생략) ②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 7. (생략) ③ 소방청장은 제37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3. 제46조제2항 ----- ----- ----- 4. (현행과 같음) 제50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 ----- ----- ----- -----. 1. ~ 7. (현행과 같음) ③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 -----. ④ ~ ⑦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안의 취지

소방용품이란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와 같이 소방시설등¹⁾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물품을 의미함(법 제2조제7호).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구성용품인 소방용품이 적정한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소방용품의 품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소방청은 ①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소방용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②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생산된 소방용품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품검사²⁾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소방용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음³⁾.

“형식승인”이란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화재의 감지·소화·피난 등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소화기 등 32개 소방용품에 대해 소방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형식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은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형식승인·성능인증 시험이 견본품 또는 시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제품검사는 형식승인·성능인증 이후 제조사에서 양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3) 현행법에 따른 인증제도 개요, 형식승인/성능인증 절차 및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현황은 [참고 1, 2, 3] 참조

후 제품검사를 받아 제조·판매하도록 하는 제도이고(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성능인증”이란 임의적 인증으로서 화재의 감지·소화·피난 등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소화전함 등 53개 소방용품에 대해서 제조자나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받은 후 제품검사를 받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제40조제1항).

현행법은 소방청장이 형식승인과 성능인증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0조제2항).

한편, 현행법은 인증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기 전에 시행하는 제품검사 기관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소방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제46조제1항 및 제50조제2항), 현재 별도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없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만 제품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 지정된 전문기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소방청은

소방용품은 설치 후 화재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성능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인증(형식승인/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단계에서의 철저한 품질 검증이 필요하고, 현재 소방용품의 품질은 2단계 (1단계:인증, 2단계: 제품검사) 절차를 거쳐 검증하는 유기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여

제품검사만 단독으로 운영하기에는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면서,

2012년에 제품검사 기관 복수화 제도 도입 이후 전문기관 신청이 전무한데, 이는 제품검사가 기술적 전문성이 필요하여 이를 위한 장비와 인력을 갖추는 등 전문기관 지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소방용품 품질인증 개요>

구분	형식승인 (‘73년~)	성능인증 (‘86년~)	기 타	
			우수품질인증(‘14년~)	KFI인증
근거	제37조	제40조	제43조 ⁴⁾	KFI 자체규정 ⁵⁾
대상지 정기준	화재의 감지·소화 ·피난 관련 기본적 소방용품	화재의 감지·소화· 피난 등에 사용되는 보완적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	기타 화재· 공공안전을 위하여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는 소방용품
인증 의무	의무사항	임의사항	임의사항	임의검사
	미검정품 유통불가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인증절 차	신청서 접수→신청서 류 검토→형식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형식승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검토→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성능인정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서류 검토→인증시험 및 품질관리체계 평가→ 우수품질인증서 발급	신청서 접수→신청 서류 검토→성능시험 및 시험시설 심사 →KFI인증서 발급
	※ 인증업무 위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제50조제2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 수행
인증이 후 유통 전 품질관 리	제품검사(양산제품 대상)(제46조제1항) -생산제품검사(생산단위별):수시검사 → 제품판매 -품질제품검사(일정주기별): 정기검사 → 제품판매 ※업무위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50조제3항)		우수품질관리체계 에 따른 유통(일정주 기별 재평가)	제품검사(양산제품 대상)(내규) -생산제품검사: 수시검사→제품판매 -품질제품검사: 정기검사→제품판매
품목	소화기 등 32개	소화전함 등 53개	소화기 등 32개	내진스토퍼 등 35개 (소방장비 별도)

(자료: 소방청)

4) “우수품질인증”이란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추가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5) KFI인증이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 이외에 소방차 등 64개 품목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여부 판단하는 임의검사임.

개정안은 형식승인과 성능인증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방청장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46조),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업무를 소방청장이 복수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0조).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구 분	현 행	개정안
전문기관 지정 범위 (§46①)	제품검사만 명시	<u>형식승인, 성능인증까지 명시적 근거 마련</u>
	제품검사	·제품검사(안 §46① 2.)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안 §46① 1.) ·성능인증 및 변경승인(안 §46① 3.)
전문기관 요건 (§46②)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 공공기관 다. 소방용품의 시험·검사 및 연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법인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일 것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5.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 전문기관 지정 방법, 절차 등 필요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	
전문기관의 의무 (§46④)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	-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
소방청장 권한 (§46⑤)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	-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 -형식승인·성능인증·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

구 분	현 행	개정안
형식승인· 성능인증 관련 업무 위탁 기관 (§50②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추가)
경비보조 (§50②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 필요 경비 일 부 보조 가능)	
제품검사 업무 위탁 기관 (§50③)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전문기관	

인증이란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품질 및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공신력있는 제3의 기관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환경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⁷⁾.

2022년 12월 말 현재 25개 부처청에서 256개의 인증제도를 운영 중인데, 인증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증의 취득과 유지를 위한 기업의 부담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⁸⁾ 정부는 인증제도를 정비하고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을 촉진하는 등 인증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인 바⁹⁾,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

6) 제46조와 제50조의 현행법과 개정안 법문 구조는 [참고 5] 참조

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354면.

8)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22.10);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 규제 정비 (2024.2.15.) 재인용

선상에서 발의된 것으로 보임.

최근 소방용품 제조를 위한 기술이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만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인증 독점 구조로 인한 검증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¹⁰⁾¹¹⁾, 인증 신청 수요가 상승하는 추세라는 점은 감안할 때(2022년 1,533건 → 2025년 1,821건, 18.8% 증가) 향후에도 인증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해 소방용품 형식인증과 성능인증을 위한 복수 인증기관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¹²⁾,

소방청장이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복수로 지정¹³⁾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9) 정부의 인증제도 개선 방향은 [참고 5] 참조

10) 소방용품 생산업체는 소방용품 형식인증과 성능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 취득에 과다한 기간이 소요되고 인증취득비 부담이 커서 새로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하고 체산성이 악화된다는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시하였음(규제개혁위원회, 법정 인증규제 검토서, 2024. 2. 27.)

11) 참고로, 2023회계연도 소방청 결산심사 과정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2020년 이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이익증가분을 사내 유보함에 따라 이자수익도 증가하고 있어('19: 6억 2,500만원 → '23: 30억 7,300만원), 금융자산 확대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수수료 수익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다수의 지적이 있었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영업이익	8,887	3,540	4,366	6,538	10,682
당기순이익	7,837	3,689	4,528	6,358	11,798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2)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 및 인증규제정비 대상과제 이행실적('24.12 월말 기준) 조사 협조 요청(소방청)공문(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조정과-138, 2025. 2. 6.) 참조

13) 지정이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를 행정주체가 선별하여 공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행위로 일정한 공권력 행사 또는 공적 업무 수행 자격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음. 다만, 지정 자체로는 업무 수행

함으로써 소방용품 인증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 시험·인증 인프라의 육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신청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형식승인 신청 건수	1,252	1,138	892	1,411
성능인증 신청 건수	281	251	605	410
계	1,533	1,389	1,497	1,821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형식승인·성능인증을 위한 복수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증체계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소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이 자동적으로 발생하지 않음.

2. 복수의 소방용품 형식승인·성능인증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가. 소방용품 인증기관 복수화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먼저, 인증기관 복수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이 제품검사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한 복수의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적·물적 기반 확보의 한계로 인해 실제 제품검사 업무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전담하고 있음. 소방청의 분석과 같이 기술적·인적·물적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향후 복수 전문기관 운영 정책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따라서, 인증기관 복수화 제도의 입법 취지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인증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더불어 신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 능력 확보 방안 및 소방용품 인증 제도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체계 마련 등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기타 보완 필요 사항

다음으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입법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첫째, 소방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에 형식승인·성능인증 관련 행정제재 수단 중 ‘제품검사 중지 명령’을 추가할 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은 인증(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후, 해당 인증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경우 변경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고(제38조 및 제41조),

i)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변경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등¹⁴⁾, ii) 인증신청 업체의 자체 시험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¹⁵⁾, iii) 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이 제품검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¹⁶⁾, iv)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는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는¹⁷⁾

㉠ 인증을 취소하거나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 인증이 취소된 자는 2년 이내에는 인증

14) 제39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 및 제42조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15) 제39조제1항제2호

16) 제39조제1항4호 및 제42조제1항제3호

17) 제42조제1항제4호

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9조 및 제42조).

한편, 현행법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변경승인, 형식승인의 ‘취소’에 관한 업무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성능인증의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0조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이와 같이 현행법(제50조제2항)이 인증 및 제품검사 업무뿐만 아니라, 인증 이후의 사후관리 단계에 해당하는 변경인증 업무와 인증 취소 업무까지 동일 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소방용품의 구조·성능·인증 경과에 대하여 실제로 인증 업무를 수행한 기관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인증 취소 사유의 발생 여부 역시 인증 업무를 담당한 기관이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됨.

참고로 다수의 법률이 행정상 제재처분을 행정청이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⁸⁾.

18) 제재처분을 위임·위탁한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1) 제재 처분을 위임·위탁하는 방식으로 규정한 입법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소방용품 품질관리 제도 관련 전문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46)		업무위탁(§50②)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형식승인 관련	형식승인		○(①;1)	기술원 (제2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2호)
	형식승인의 변경승인		○(①;1)	기술원 (제3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3호)
	행정제재				
	형식승인의 취소			기술원 (제4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4호)
	제품검사 중지			-	-

- 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②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8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취소 또는 물질동등성의 인정취소
 12. 법 제26조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취소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 (2) 인증 관련 제재 처분을 인증기관의 권한으로 규정한 입법례
- 「산업표준화법」
-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가공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제품의 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광공업품을 제조하는 자는 공장 또는 사업장마다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제품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 제22조(인증의 취소) ① 인증기관은 인증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진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진심사, 제20조제1항에 따른 시판품조사·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가 한국산업표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4. 제20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제품수거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6.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46)		업무위탁(§50②)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성능인증 관련	성능인증		○(①;3)	기술원 (제5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5호)
	성능인증의 변경인증		○(①;3)	기술원 (제6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6호)
	행정제재				
	·성능인증의 취소			기술원 (제5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5호)
	·제품검사 중지			-	-
제품검사		○(①)	○(①;2)	기술원 (§50③)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 (§50③)
방염성능검사				기술원 (제1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1호)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				기술원 (제7호)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제7호)

그런데 현행법과 개정안은 인증 취소 업무(㉠)만을 위탁가능하도록 하고 있을 뿐, 또 다른 행정상 제재 수단인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 명령(㉡)은 위탁가능 업무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이 인증·변경인증 업무 외에 인증취소 업무도 위탁 가능한 업무로 규정한 취지가 인증제도의 실효성 제고라는 점, 행정상 제재 처분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행정상 제재 수단 중 인증 취소 명령(㉠)이 제품검사의 중지 명령(㉡)보다 더 엄중한 수단이라는 점, 현재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명의로 인증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처분이 통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행법 및 개정안과 같이 인증취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 중지’ 명령도 함께 위탁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재 처분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2	2023	2024	2025
형식승인	승인취소	1	2		1
	제품검사 중지				
성능인증	승인취소	1		1	
	제품검사 중지				1
계		2	2	1	2

(자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둘째, 인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형식승인·성능인증 관련 행정제재 수단인 ‘형식승인의 취소’와 ‘제품검사 중지 명령’ 업무를 추가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현행법과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제46조)과 업무의 위탁(제50조)을 독립된 조문에서 규정하여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소방청장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구조로 법문이 구성되어 있는 바¹⁹⁾20),

19) 현행법과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제46조)과 업무의 위탁(제50조)을 독립된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음. 즉, 전문기관은 제46조에 따라 지정된 이후 다시 제50조에 따른 업무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위탁의 이중 구조를 취하고 있음.

소방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인증 취소 및 제품검사 중지 명령과 같은 인증 관련 제재 업무를 포함하도록 입법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도 해당 제재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제도의 체계성과 법적 명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 위탁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현행법은 인증 업무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면서 업무 위탁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50조제2항).

이는 전문기관 지정은 특정한 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권한·업무의 위탁은 법률에서 소방청장의 권한·업무로 규정된 것을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각각은 독립된 제도이므로 조문을 달리하여 규정한 것으로 이해됨.

20)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 위탁을 각각 다른 조문에서 규정한 입법례(예시)는 다음과 같음.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88조(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 ~ 12. (생략)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 40.(생략)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반면, 개정안은 복수의 전문기관이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술원에 대해서만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 필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안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후단).

<현행 및 개정안: 위탁기관 경비 보조 관련>

구 문	현 행	개정안
위탁가능 기관 (§50②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제46조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50②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 필요 경비 일부 보조 가능)	

소방용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동일한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특정기관에 대해서만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위탁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모든 기관에 대하여 필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다수의 법률이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 사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²¹⁾).

21) [참고 입법례]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사업자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6조제6항 및 이 조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와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넷째,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 업무를 복수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는 품질 및 생산 공정이 일정 요건에 맞는지 검사하여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중에서도 성능 및 자체품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제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우수품질인증을 받으려면 형식승인 요건보다 까다로운 품질 관리체계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인증을 받더라도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노력 규정 외에 우수품질인증에 따른 실질적인 혜택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제도 시행 이후 1개 업체, 3개 품목에 대해서만 인증 실적 이 있고,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발급현황이 전무한 실정임.

<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증명발급 현황(2014 ~ 2025) >

업 체	품목	인증번호	세 목	인증일자
동방전자산업(주)	감지기	감97-12-4	정온식스포츠형	'14. 09. 20
	감지기	감00-25-2	광전식	'14. 09. 20
	감지기	감95-9-4	이온화식	'14. 09. 20
	감지기	감08-23-2	차동식스포츠형	'15. 11. 15
	수신기	수06-8	R형복합식	'15. 11. 15
	중계기	중07-38-1	R형용, 반도체식, 4회로	'15. 11. 15
	중계기	중02-8-4	R형용, 반도체식, 2회로	'15. 11. 15
총	3개 품목			

(자료: 소방청)

이러한 이유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고²²⁾ 소방청도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폐지를 적극 검토 중임.

이와 같이 현재 사실상 활용되지 않는 제도인 우수품질인증에 대해서도 복수의 기관에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소방용품 제조·유통업자로 하여금 정부가 동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도 있다고 보이므로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 업무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향후 관련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문 의 처
02)6788-5351

2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2216037호, 채현일의원 대표 발의)이 2026년 1월 15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참고 1 소방용품 인증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 인증제도의 정의

- 소방용품의 품질 및 생산 공정이 규정된 요건에 맞는지를 검사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하고 증명하는 제도

○ 인증제도 경과 및 효과

- 화재로부터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방용품 품질인증 제도가 1973년 제정
- 소방용품 성능 향상 및 품질 경쟁력 상승으로 수출 증대 기여

○ 인증 종류

구분	형식승인('73년~)	성능인증('86년~)	우수품질인증('14년~)	KFI인증
근거	제37조 ²³⁾	제40조 ²⁴⁾	제43조 ²⁵⁾	KFI 자체규정 ²⁶⁾
인증 의무	의무사항	임의사항	임의사항	임의검사
	미검정품 유통불가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미검정품 유통가능
인증 업무 위탁	한국소방산업기술원(제50조제2항)			-
품목	소화기 등 32개	소화전함 등 52개	소화기 등 32개	내진스토퍼 등 34개 (소방장비 별도)

○ 타국의 인증제도

-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 간 상호 인정협정(MRA²⁷⁾)은 체결하고 있지 않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25) ① 소방청장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중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26) KFI인증이란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품목 이외에 소방차 등 64개 품목에 대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여부 판단하는 임의검사임

27)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각국의 인정기관 간에 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동 협정에 가입한 타국의 인정기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에 대하여 자국의 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인정해

* 미국(UL,FM마크), 독일(VdS마크), 영국(LPCB마크), 일본(NS마크), 중국(CCC마크)

○ 인증업무 위탁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위탁근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참고 2

소방용품 형식승인 · 성능인증 · 우수품질인증 비교

(자료: 소방청)

유형	의무인증	임의인증	
	형식승인	성능인증	우수품질인증
인증 절차	< 신청서 접수 >		
	- 관련 서류 - 견본품		
	< 신청서류 검토 >		
	- 신청서류 적합성 검토 - 견본품과 신청서류 일치성 검토		
	형식시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형식승인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성능시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이하 “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인증시험 우수품질인증제품의 기술기준(이하 “우수품질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시험
	< 시험시설 심사 >		< 품질관리체계 평가 >
인증 절차	제조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험시설이 시설기준(이하 “시험시설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우수품질관리체계의 평가기준(이하 “품질관리체계 평가기준”)에 맞는지를 심사
	형식승인서 발급	성능인증서 발급	우수품질인증서 발급
제품 검사	< 생산제품검사 >		
	생산된 소방용품을 출고하기 전에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성능인증기준등에 맞는지를 검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시험시설로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 사업장에서 시행할 수 없는 시험은 제품을 수거하여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합격표시 부착		
	< 품질제품검사 >		
제품 검사	공정심사 소방용품 제조과정 등의 품질관리체계를 심사		
	정밀검사 생산된 소방용품의 형상등이 형식승인기준·성능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일정한 주기를 정하여 검사 * 사업장을 방문하여 제품수거 후 기술원·제품검사 전문기관에서 검사		
	합격표시 부착		
수집 검사	소방청에서 유통중인 소방용품을 수거 후 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년 2회, 상·하반기)		

참고 3 형식승인/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자료: 소방청)

○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

구 분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시행령 제6조 관련 및 별표3)
1.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기구(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소공간소화용구)
	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캐비닛형, 가스, 분말, 고체에어로졸)
	다. 소화설비를 구성하는 소화전, 관창, 소방호스, 스프링클러헤드,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및 가스관선택밸브
2.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누전경보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나.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발신기, 수신기, 중계기, 감지기 및 음향장치(경종만 해당)
3. 피난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간이완강기 및 지지대 포함)
	나. 공기호흡기(충전기 포함)
	다. 유도등 및 예비전원이 내장된 비상조명등
4. 소화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또는 기기	가. 소화약제
	나. 방염제(방염액·방염도료 및 방염성물질)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관련 제품 또는 기기	

○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관련 및 별표 7	(21.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 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내화전선 및 내열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제>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13. 소방용 스트레이너 14. 소방용 압력스위치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6.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18. 소화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 19. 방수구 20.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 21. 소방용흡수관 22.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성능인증 기술기준 현재 없음)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합장치 3. 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차압·과압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피난기 13. 미분무헤드 14. 방열복 15.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16. 압축공기포헤드 17. 압축공기포혼합장치 18. 플랩댐퍼 19.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제46조: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문 구조>

현행(제46조)	개정안(안 제46조)
	① 전문기관 지정 대상 업무 범위: 형식승인 및 변경승인, 제품검사업무, 성능인증 및 변경인증
①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근거 및 요건 1. 기관의 법적 성격: 공공성 또는 비영리성 2. 시험·검사 역량의 객관적 검증 3. 인적·물적 요건 4. 대표자 결격사유 5. 재지정 제한	② 전문기관 지정 요건 및 지정절차 위임 * 요건: 현행법 제46조제1항 각 호와 동일 내용 * 위임 관련 법문: 현행법 제46조제2항과 동일
② 전문기관 지정절차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	
③ 전문기관 지정 시, 소방용품 품질 향상, 제품검사 기술 개발 등에 드는 비용 부담 등 조건 부과 가능	③ (좌 동)
④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현황 보고 의무	④ 전문기관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 현황 보고 의무
⑤ 소방청장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및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 검사	⑤ 소방청장의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및 형식승인,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한 확인 검사
⑥ 소방청장의 결과 공표	⑥ (좌 동)
⑦ 소방청장의 검사에 대한 전문기관의 비용 부담	⑦ (좌 동)

<제50조: 현행법과 개정안의 법문 구조>

현행(제50조)	개정안(안 제50조)
① 내부 행정조직 간 위임	① (좌 동)
② <u>한국소방산업기술원</u> 위탁 가능 업무. * 기술원에 경비 일부 보조 가능	② <u>한국소방산업기술원 및 전문기관</u> 위탁 가능 업무. * 기술원에 경비 일부 보조 가능
1. 방염성능검사 일부 2. 소방용품 형식승인 3. 형식승인 변경승인 4. 형식승인 취소 5. 성능인증 취소 6. 성능인증 변경인증 7. 우수품질인증 및 취소	(좌 동)
③ 제품검사 업무 위탁: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	③ (좌 동) * 위탁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④ 위탁 업무 수행기관(기술원,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	④ (좌 동)
⑤ · ⑥ 기타 행정·연구성격 업무의 외부 위탁	⑤ ~ ⑦ (현행과 같음)
⑦ 위탁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 의무	

참고 5 정부의 인증제도 개선방안²⁸⁾

(자료: 관계부처 합동)

1 인증제도의 현황

- (개념) 인증(certification)이란, 특정 제품, 공정, 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확인·증명
 - 사전에 품질, 규격,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기준을 마련해 놓고, 전문성을 가진 제3자인 인증기관이 적합여부를 심사·평가
 - * 신청 → 시험·검사 → 평가 → 인증(마크 부여) → 사후관리(취소, 재인증 등)
 - 법정인증은 국민안전 등을 위해 인증취득 없이 생산·유통을 금지하는 의무인증과 강제성이 없는 임의인증으로 구분
- (운영현황) '22년말 현재, 25개 부처청에서 256개 인증제도 운영중
 - 지속적인 인증제도 정비(별첨2에도 불구하고 인증 신설이 증가하여 '10년말 대비 100여개 증가

2 인증제도의 문제점

- 인증제도의 난립과 중복
 - 기존 규제나 인증과 유사·중복되거나, 실제 인증실적이 저조하고 해외에 유사인증도 없는 등 시장 신뢰를 얻지 못한 인증이 다수 존재
 - *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
 - (美) 93개, (EU) 40개, (中) 18개, (日) 14개
 - 안전성 확인보다는 품질보장 또는 특정 정책추진을 위한 조장·급부행정 수단으로 인증을 활용하는 사례 증가
- 인증 취득·유지를 위한 기업의 부담 과다(중기중앙회 조사, 22.10)

- ①인증비용 감면(96.3%) ② 불합격을 낮춘 임의인증 폐지(82.7%) ③ 유효기간 연장(82.0%)
 - ④국제표준 통일(72.3%) ⑤인증기준시험방법 개선(66.3%), ⑥유사중복인증 통합(60.3%) 등의 순

28) 관계부처 합동,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2024. 2. 15.

3

인증제도 개선방향

◇ 256개 인증 전체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 관계기관 협의('23.2~'23.12)를 거쳐 9대 개선방안 마련

개선 방안	주요 내용
① 인증제도 정비	①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② 유사·중복 인증 통합 ③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 ④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
②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⑤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⑥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⑦ 해외인증 인정 확대
③ 관리시스템 개선	⑧ 인증 신설 절차 강화 ⑨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① 실효성이 낮은 ①인증제도 폐지, ②유사·중복인증제도를 통합하고 기업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③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 등 개선

○ ④소비자 혼선을 유발하는 유사 인증 제외하며, 「e나라 표준인증」(국가기술표준원) 목록에서 삭제하고, 향후 인증의 마크 사용을 제한

☞ 총 256개 중 189(존속△67)개에 대해 정비방안 마련

구분	폐지	통합	개선	제외
정비 건수	25	8	65	91

② ⑤자기적합성 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⑥민간 인증기관 진입 허용, ⑦해외인증 인정 등 인증제도의 글로벌화 추진

*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성을 선언(기업 책임성 강화, 부담 경감)

③ ⑧ 인증 신설 절차를 강화하여, 남발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인증 취득에 기업의 비용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⑨공공조달의 인증가점 정비 등관리시스템 개선

※ 별첨: 국내 형식승인 종류별 인증기관 현황(자료: 소방청)

분야	인증기관	관계법률	비고
가스	· 한국가스안전공사(KGS)²⁹⁾ : 가스용품 · 안전보건공단(KOSHA)³⁰⁾ : 가스용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³¹⁾ : 가스용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88조(안전인증) ※ 개별제품별 시험설비 보유(KS)	(법률) 복수기관
			(적용) 복수기관
전기	·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³²⁾ : 전기설비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³³⁾ : 전기용품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³⁴⁾ : 전기용품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전기용품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품분류 중 3분의 1 이상 시험설비 보유	(법률) 복수기관
			(적용) 복수기관
승강기	·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³⁵⁾ : 승강기 안전인증 및 부품 안전인증 · 승강기안전기술원(ESTI)³⁶⁾ : 승강기 안전인증 및 부품 안전인증	승강기안전관리법 제22조(안전인증의 대행) 및 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제품분류 중 3분의 1 이상 시험설비 보유	(법률) 복수기관
			(적용) 복수기관* *승강기안전기술원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부설기관(독자 법인격)
항공보안	· 항공안전기술원(KIAST)³⁷⁾ :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단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 시험기관(복수)	항공보안법 제27조(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등) 및 제27조의4(시험기관의 지정)	(법률) 복수기관*
			*성능인증(단수) 시험기관(복수) (적용) 단수기관

29) 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가스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KGS는 가스기기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며, 국내 가스산업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2024년 9월 기준, KGS 소관 안전인증 현황은 총 9,393건으로 집계되었다.

- 30) 안전보건공단(KOSHA)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근로자의 안전유지 및 보건증진과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편 KOSHA는 산업재해예방과 근로자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1)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 32)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3)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석유화학, 녹색산업 등에 대한 시험·평가·인증과 연구·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내산업의 기술고도화 및 대외성과 유지향상을 도모하여 수출진흥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34)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 시험·인증·기술컨설팅을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이다.
- 35) 한국승강기안전공단(KOELSA)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과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업무의 대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36) 승강기안전기술원(ESTI)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부설기관으로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37) 항공안전기술원(KIAST)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항공안전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항공사고 예방에 관한 인증·시험·연구·기술개발 등을 수행함으로써 항공안전을 확보하고 항공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참고 6 방염성능검사제도 개요

(자료: 소방청)

(배경) 제조 또는 생산과정에서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 또는 생산된 물품과 설치현장에서 방염성 물질을 이용하여 방염 처리하는 물품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서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정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과 그 밖에 유사한 물품(커튼, 무대막 등)에 대하여 방염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

(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¹⁾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 등을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카페트, 커튼, 합판 등의 ²⁾ 물품

¹⁾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2) 대상 품목 (13품목)	
선처리물품	브라인드, 커튼, 카페트, 벽지, 합판, 섬유판, 암막, 무대막, 목재, 소파·의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시트, 기타물품
현장처리 물품	합판, 목재

(근거) 방염성능검사 관련 법규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제50조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31조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행안부령)
- 방염성능기준(고시)